

##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annuri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센트럴프라자 431호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annuri@hannurilaw.co.kr](mailto:hannuri@hannuri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           |  |            |  |
|-----------|--|------------|--|
| 투자자<br>성명 |  | 주민등록<br>번호 |  |
| 주 소       |  |            |  |
| 핸드폰<br>번호 |  | 이메일<br>주소  |  |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     |  |          |  |     |  |
|-----|--|----------|--|-----|--|
| 은행명 |  | 계좌<br>번호 |  | 예금주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주)씨모텍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1심, 2심 및 3심)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송허가신청의 제기,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수행,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11. . . .

위임인

(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       |          |       |                      |
|-------|----------|-------|----------------------|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 건 명 |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
| 당 사 자 |          | 상 대 방 | 동부증권(주) 등            |

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을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성공보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동부증권(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민사소송의 1심 제기 후 판결, 화해 등으로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원금, 이자 등 명목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1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